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감 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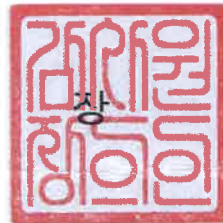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 환경운동연합 귀하 (우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누하동 251)
(누하동))
(경유)
제목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1. 국민 다수의 공익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7. 4. 19. 감사원에 제출하신 공익감사청구[분류 번호: 2017-공익-37호,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검토 결과 1부.

감 사 원



부감사관 권기영 과장 전결 2017. 11. 3. 홍성재

협조자

시행 감사청구조사단체3과-447 (2017. 11. 3.) 접수

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삼청동, 감사원) / <http://www.bai.go.kr>

전화번호 02-2011-2771 팩스번호 02-2011-2775 / kky9543@korea.kr / 비공개(6)

[붙임]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검토 결과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승인 등 관련)

이 건 공익감사청구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의견과 2017. 9. 29. 감사원에서 개최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수렴한 후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1.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심의 의결 부적정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라 한다)는 새정부가 전력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고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자부는 '17년 10월 현재까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 사무처리가 없습니다.

2.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위배 관련

산자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위배되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으로 있어 공중보건의 위협을 초래한다는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자부는 '16년 6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전인 '12년 6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 “1항”과 같이 산자부는 '17. 10월 현재까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 사무처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1항” 및 “2항” 관련사항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지역편중 관련

산자부는 '22년까지 신·증설하는 석탄발전소 17개소 중 9개를 충남지역에 신·증설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편중을 심화시킨다는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전소가 충남지역에 밀집된 사유는 전력의 주 수요처인 수도권과의 근접성, 연료 해상운송 편의성 등 때문이고 '22년까지 신·증설하는 석탄발전소 9개를 대기오염 기준이나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남지역에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16년 7월에 '30년까지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57% 감축하기로 계획한 바 있는 등 관련 절차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4.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련

산자부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를 과다하게 신·증설하고 있다는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전소 추가 신·증설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현재 전력수요의 증가추세는 물론 경제상황 변동 시의 향후 전력수요와 연중 최대 전력피크 등 관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시 예상한 향후 전력수요의 '연간 증가율'보다 현재시점에서의 전력증가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5.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정책 강행 관련

산자부는 당진시 등 25개 지자체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철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은 '13년 12월 당진시와 협의 하에 추진하였고 주

민투표 요구를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6.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관련

산자부 등은 '15년 1월 SK가스(주)가 당초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고, 위 부처는 위 업체에서 당진에코파워(주)의 지분 일부를 양도 받는 데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재정적 지원의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내용과 대기업이 발전소 건설을 하면 동부화력발전소의 사례와 같이 송전설비 추가 확충 시 사업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자부가 '15년 1월 승인한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SK가스(주)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1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방안에 따라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분 40% 중 6%를 매각하면서

'15. 11. 10. 우선 산업은행에 매입의사를 물어 매입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SK가스(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 27.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SK가스(주)는 PF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어 금융적 특혜 여부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전설비 추가 확충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별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발전소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송전설비공사 관련 사업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위 “3항”에서부터 “6항”까지의 관련 사항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합니다.